

신영체임버홀 대관 계약서

공 연 개 요			
단체(공연자)명		장르	
공연일시(기간)			
공연시간(일시별)			
대 관 비			
계약금 납부일			
잔금일			
계약금			
잔 금			

• 대관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387-04-0000-208, 예금주: 신영증권

대관 신청자	
연 락 처	

★ 대관 신청자는 『신영체임버홀 대관 규정』(붙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공연의 진행 및 안전 관련 책임은 공연 주최측에 있습니다.

대관 신청자는 위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신영체임버홀 사용을 신청합니다.

※ 첨부: 신청자 사업자증명서(해당 시)

년 월 일

신영증권(주)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 영 증 권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신 요 환

대 관 자

주 소:

성 명:

(인)

신영체임버홀 대관 규정

■ 대관 절차

제1조 대관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빌딩 1층에 위치한 신영체임버홀(이하 "체임버홀"이라 칭함)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관의 정의 및 범위

-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강연' 등을 위하여 체임버홀의 시설 및 부수 장비를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체임버홀에 대관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3) 신영증권(주)는 체임버홀의 소유자로서 대관시설, 부수 장비의 관리 유지, 입장 통제, 안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이하 "신영증권(주)"라 함은 신영증권(주)로부터 체임버홀의 대관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4) 이 규정을 적용 받는 범위는 체임버홀의 모든 시설, 설비 및 부수 장비에 해당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대관 시간에 따라 오후대관과 저녁대관으로 구분한다.

- 1) 오후대관은 10:00 ~ 16:00 (기준: 리허설 10:00 ~ 13:00, 공연 시작 14:00)로 한다.
- 2) 저녁대관은 16:00 ~ 22:00 (기준: 리허설 16:00 ~ 18:30, 공연 시작 19:30)로 한다.

제4조 대관의 절차

대관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대관 신청 → 대관 심사 → 결과 통보 → 대관 계약 → 잔금 납부 → 부대시설 사용 확인 및 진행 협의 → 공연 진행 → 부대시설 사용 정산

문의사항 전화 02)2004-9592, FAX 02)2004-9299

1) 대관 신청

- ㄱ) 홈페이지(chamber.shinyoung.com)에서 대관신청서(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공연계획서 포함)를 다운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이메일(홈페이지 안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 ㄴ) 대관일 기준 최소 1개월 전에 신영증권(주)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영증권(주)가 인정하는 경우 대관신청일은 조정 가능하다.

2) 대관 심사 및 결과 통보

- ㄱ) 신영증권(주) 내부 수시 회의를 통해 신청 공연의 적절성을 심사하여 대관 승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 (1) 프로그램: 클래식, 국악 공연 및 강연, 이 밖에 신영증권(주)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출연자: 관련 전공자 및 전문 연주 단체 등 해당 프로그램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ㄴ) 대관 심사 결과는 신청 후 4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한다. (대관자가 요청할 경우 승인서 추후 발급)
- ㄷ)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 계약

- ㄱ)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정 이내(통상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등기우편 발송 및 직접 방문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한다.
- ㄴ) 계약 체결일(등기우편을 통한 계약 시, 대관자에게 서명날인이 완성된 계약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본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서 대관승인서에 안내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승인을 취소한다.
- ㄷ) 단, 계약 시점에서 1개월 내에 대관 공연 일정이 있는 경우 ㄴ)에 대한 예외로 기본대관료 전액을 신영증권(주)와 협의한 날짜까지 입금한다.
- ㄹ) 대관계약서 날인 및 계약금 납부 후에 계약은 성립한다.

4) 잔금 납부

- ㄱ) 대관자는 공연일 14일 전까지 기본대관료의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ㄴ) 잔금 미납시 자동으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금에 대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5) 부대시설 사용 신청 및 정산

ㄱ) 부대시설 사용(녹음, 녹화, LED, 로비 사용 등)은 대관과 함께 신청하며, 신청 후 변경 사항은 공연 일주일 전까지 확정 및 변경 완료하여야 한다.

ㄴ) 이후 변경 사항 중 항목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금액의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다.

ㄷ) 부대시설사용료는 공연이 끝난 당일 대관자와 신영증권(주) 양자 확인 및 서명이 완료된 확인서에 의해 청구되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ㄹ) 납부 시한을 어길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제5조 기본대관료

- 1) 기본대관료는 [별표1]에 따라 적용되며, 전체 사용 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기본대관료에는 대기실, 기본 조명, 냉·난방 사용료가 포함되며, 공연 진행을 위한 무대 감독 1명, 기본 음향 및 조명 담당 1명, 하우스 검표 담당 1명 등의 인력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만약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 신영증권(주)와 협의 후 대관자가 직접 섭외하여 투입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 3) 기본대관료는 매년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대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정해진 사용 기준 시간 초과시에는 [별표1]에 따라 1시간당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 5) 신영증권(주)는 초청하는 공연 및 후원하는 공연, 기획 대관의 경우 기본대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줄 수 있다.

제6조 부대시설사용료

- 1) 부대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라 적용되며, 명시되지 않은 시설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 2) 신영증권(주)가 제공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전에 요청되지 않은 부대시설은 사용이 거절될 수 있다.
- 3) 부대시설사용료는 매년 물가 지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금액 적용은 대관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공연 목적 외의 장비는 무대에 설치 할 수 없다.
- 5) 녹음과 녹화용 USB는 대관자가 미리 준비하여 공연 당일 스태프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6) 녹음과 녹화 파일은 공연 당일 종료 후 USB로 직접 수령이(최소 30분 소요) 원칙이다. 연주자의 사정상 당일 수령이 불가할 경우, 향후 신영증권 영업시간 내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한다. 만일 우편, 택배, 퀵 등으로 수령을 희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착불)하며, 분실 시 신영증권(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 7) 녹음과 녹화 파일의 보관 기간은 파일 생성 후 2개월로 한정하고, 이후 파일이 손상되거나 파기되어도 신영증권(주)가 책임지지 않는다.
- 8) 공연 녹화 및 녹음 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영증권(주)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9) 외부 장비 사용시 신영증권(주)과 사전 협의를 통해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 10) 외부 영상 및 사진 촬영(언론사 배포, 방송 중계 포함)은 공연 전일까지 신영증권(주)와 협의한다.
- 11) 로비 사용
 - ㄱ) 리셉션: 원형 하이 테이블 6개가 제공되며, 이 외에 리셉션 및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관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다. 리셉션을 위해 별도의 설치물이 필요하거나, 체임버홀의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신영증권(주)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 ㄴ) 리셉션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간단한 다과류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다과에 포함되는 최종 메뉴(핑거푸드, 음료 포함)를 공연 2주 전에 서면으로 신영증권(주)에 제출해야 한다. 행사 당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메뉴가 준비될 경우, 신영증권(주)는 리셉션을 임의 취소할 수 있다.
 - ㄷ) 다과 및 음료는 신영증권(주)가 허가한 장소 이외의 공간으로 반입, 반출을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연장 내 반입을 엄격히 금한다.
 - ㄹ) 리셉션 진행은 공연 1시간 전 이내, 인터미션 중, 공연 후 1시간 이내에 한한다.
 - ㅁ) 사인회: 테이블 및 의자가 제공되며, 공연 후 1시간 이내에 한한다. 사인회에 필요한 집기는 신영증권(주)와 협의한 위치에 대관자가 설치 및 준비한다.

■ 대관 변경 및 제한

제7조 대관 취소 및 반환

- 1)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시점	위약금
ㄱ) 공연일로부터 14일 미만	기본대관료의 100% 위약금 징수
ㄴ) 공연일로부터 14일 이상 60일 미만	계약금의 100% 위약금 징수
ㄷ) 공연일로부터 60일 이상 90일 미만	계약금의 50% 위약금 징수
ㄹ) 공연일로부터 90일 이상	위약금 없음

- 2) 아래의 사유의 경우 신영증권(주)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지급 완료한 계약금을 포함한 일체의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 ㄱ)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ㄴ) 정한 기일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ㄷ) 공연의 주요 출연자가 대관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현저히 낮은 수준의 출연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 ㄹ) 신영증권(주)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 ㅁ) 9조 대관 신청 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ㅂ) 신영증권(주)의 승인없이 과도한 교환권(할인권 포함)을 발행하여 공연장의 좌석이 부족한 경우

- 3) 외선 고장으로 인한 정전, 화재 사고와 천재지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게 된 경우, 대관자는 신영증권(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대관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8조 대관 변경

- 1)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ㄱ) 원칙적으로 일정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연일 30일 전에 일정 변경을 신청하여 신영증권(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ㄴ) 최초 1회 조정 수수료는 무료이며, 이후 기본대관료의 10%를 일정변경수수료 징수한다.

- 2)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연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ㄱ) 대관자는 공연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 체결 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

지 않는다면 사전 승인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 ㄴ) 사전 승인이 없는 내용을 공연하여 신영증권(주) 또는 체임버홀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경우, 대관자는 즉각 그에 상당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며, 신영증권(주)는 다음 회부터의 대관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 완료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 대관 신청 제한

-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한다.
 - ㄱ)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
 - ㄴ) 체임버홀 시설 또는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연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대관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ㄷ) 체임버홀의 대관 승인 이후 대관자 임의로 대관계약을 취소한 전력이 있는 경우
 - ㄹ) 체임버홀 관련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 ㅁ)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ㅂ) 대관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ㅅ) 신영증권(주)의 승인 없이 공연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공연한 경우

제10조 사용권 양도 및 전도금지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이로 인해 얻게 된 체임버홀의 관련 시설 이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 승인 또는 계약 체결 후, 공동 주최 및 초청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영증권(주)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입장권

제11조 입장권 발행 및 운영

- 1) 대관자는 입장권 발행 및 운영 등 입장권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신영증권(주)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지 않는다.
- 2) 입장권 금액은 체임버홀의 설립 취지 및 가격 운영 내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운영하는 좌석의 수와 배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신영증권(주)와 협의해야 한다.

- 3) 대관자가 입장권을 인쇄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고 입장권에 명시해야 한다.
 - ㄱ) 어린이 입장은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에 한한다. (단, 공연의 특성에 따라 연령 제한은 조정할 수 있다.)
 - ㄴ) 공연 시작 1분전까지 입장을 완료해야 하며, 공연 중에는 공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
 - ㄷ) 음식물, 꽃다발은 체임버홀에 가지고 입장할 수 없다. 특히, 어떠한 경우라도 화환의 건물 반입은 금한다.
 - ㄹ) 휴대전화와 호출기는 반드시 꺼야 한다.
 - ㅁ) 장내에서는 사진 촬영 및 캠코더 녹화, 녹음 등 공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ㅂ) 모든 인쇄물에 사용되는 체임버홀 로고, 약도 등 신영증권(주)에서 대관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 4) 신영증권(주)는 대관자와 협의하여 신영증권 고객에게 입장권 금액을 일정 비율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신영증권(주)와 합의 하에 대관 공연의 초대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 공연 준비 및 진행

제12조 공연 준비

- 1) 대관자는 공연 시작 최소 2주전까지, 공연관련 자료(부대설비, 하우스 진행, 프로그램 등)를 신영증권(주)에 이메일로 전달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안내)
- 2)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스태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에는 대관자 스태프, 체임버홀 스태프가 참석한다. 대관자는 스태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리허설

- 1) 기본대관료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리허설 시간은 3시간이며, 기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추가 대관료 납부해야 한다.
- 2) 추가 대관료는 시간당 150,000원(VAT별도) 부과된다.

제14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 1) 대관자는 체임버홀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신영증권(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신영증권(주)는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20만원) 부담 및 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대관자가 반입하는 관련 설치물들은 현행 소방법에 규정된 방염처리가 완결된 시설물이어야 한다.
- 3) 대관자는 사용한 설치물들을 사용 완료 즉시 원상회복 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신영증권(주)가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20만원)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을 즉시 반납한다. 단, 신영증권(주)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제15조 광고, 홍보물

- 1) 대관 공연의 광고, 홍보는 대관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체임버홀에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영증권(주)가 지정한 사이즈와 위치를 준수해야 한다.
- 2) 대관자는 공연 2주 전까지 프로그램, 입장권, 포스터, 홍보영상 등 신영증권(주)이 보관용으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신영증권(주)가 원하는 수량으로 제출해야 한다.
- 3) 무료로 제공되는 공연 홍보(체임버홀 홈페이지, 로비 TV 모니터, 사이니지)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은 대관자가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방송, 판촉

- 1) 체임버홀의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녹화, 녹음, 방송할 때에는 중계 위치, 시설 사항 등 공연 2주전까지 신영증권(주)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2) 방송 관련 중계 및 녹화의 경우 체임버홀 내 녹화 차량의 주차 위치가 협소한 관계로 대관자는 반드시 수일 전에 체임버홀 측과의 협의 하에 방송 중계 및 녹화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영증권(주)는 대관자의 방송 녹화 및 중계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3) 체임버홀에서의 판촉(연주자 음반 판매 등), 포토월, 사인회 등의 행사는 신영증권(주)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공연 진행

- 1) 오후 대관은 공연을 14:00에 시작하고, 저녁 대관은 공연을 19:30에 시작하며, 리허설은 무대와 객석 정리를 위하여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 2) 대관자는 상기 리허설 및 공연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리허설 및 공연시작시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신영증권(주)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저녁 공연의 경우 오전 리허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대관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신영증권(주) 스태프의 작업 일정에 무리가 없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대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
- 4)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신영증권(주)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체임버홀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신영증권(주)는 공연을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5) 출연자 대기실은 대관자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영증권(주)은 대관자 물품의 분실 및 도난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 신영증권(주)은 대관자와 대관자 측 스태프 포함 최대 3대의 차량까지 무료 주차를 제공한다. 이 외의 차량은 시간당 1,000원씩 3시간까지 할인 적용하여 제공한다. (입장권 소지한 관람객 동일한 할인 적용, 3시간 초과시 10분당 1,000원씩 부과) 단, 주차장의 만차로 인해 외부의 다른 주차장 이용 시에는 할인을 포함한 별도의 주차비 지원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 7) 체임버홀 내에 음식물 반입은 불허한다.
- 8) 청소, 냉난방 등 관객 편의를 위한 객석 관리와 공연 진행은 신영증권(주)이 확인한다.
- 9) 관객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체임버홀 내 외부 사진 촬영, 녹음, 녹화는 금지된다.

■ 관리 의무 및 책임보상

제18조 관리 의무 및 손해 배상

-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체임버홀 시설 및 설비 사용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대관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손해 배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대관자는 신영증권(주)가 정하는 체임버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대관자는 체임버홀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 4) 신영증권(주)는 대관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야기된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신영증권(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5) 대관자는 신영증권(주)가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청구를 당하더라도 신영증권(주)는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관자는 신영증권(주)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9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신영증권(주)와 대관자와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0조 규정 변경 승인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더 필요한 사항이 요구될 경우 신영증권(주)는 규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규정을 변경할 경우 신영증권(주)는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서 발송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영증권(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경에 관한 통지가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1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영증권(주) 및 체임버홀의 관련 규정과 상용 관례에 따른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신영증권(주)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3조 규정 위반시의 책임

이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이를 필히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적용 시기

본 규정 안은 2019년 10월 25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신영증권(주) 신영채임버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신영증권본사 1층

chamber.shinyoung.com | T. 02-2004-9592 F. 02-2004-9299

문의사항 전화 02)2004-9592, FAX 02)2004-9299

[별표1] 기본대관료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내역	비용	기준	비고	
기본 대관 료	오후 대관 (10:00~16:00)	1,000,000	5시간(공연 전 1시간 휴식 별도) 기준 10:00~13:00 리허설 14:00~16:00 공연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만원 대관료 포함 사항: 무대 감독 1명, 기본 음향 및 조명 담당 1명, 하우스 및 검표 담당 1명, 체임버홀 및 대기실 냉난방, 기본 조명	
	저녁 대관 (16:00~22:00)		5시간(공연 전 1시간 휴식 별도) 기준 16:00~18:30 리허설 19:30~22:00 공연		
	피아노 Steinway B211	100,000	1회 기준: 리허설 및 공연 포함 최대 5시간 현 터치 및 프리패어드 불가		기준 시간 초과 시 추가 1회로 간주하여 과금
	피아노 조율	160,000	1회 실비 / 지정조율사		리터치 필요 시 50% 추가 비용 발생

*(단위: 원 / 부가세 별도)

[별표2] 부대시설사용료 (2019년 9월 1일 기준)

구분	내역	비용	기준	비고
부 대 시 설 사 용 료	LED	150,000	1 회	FHD 240 인치 대관자 요청에 의한 공연 관련 자료 상영 시(영상, 사진, 노래 가사 등)
	녹음 (기록용, 별도 편집 없음)	80,000	1 회 파일 보관 기간: 공연 종료 후 2 개월까지	파일 형식: wav 파일 수령용 USB, 대관자 직접 구입 및 공연 시작 전 전달
	녹화 (기록용, 별도 편집 없음)	100,000		파일 형식: MP4 파일 수령용 USB, 대관자 직접 구입 및 공연 시작 전 전달
	로비 사용료	100,000	1 회 기준: 3 시간 (케이터링 셋팅 시간 포함) 기준 시간 초과 시 추가 1 회로 간주하여 과금	리셉션 또는 사인회 진행 시

*(단위: 원 / 부가세 별도)